

국민연금공단 공무원(시설직) 공개채용 공고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에서는 공단 사옥의 시설 안내 업무를 수행할 공무원 지원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뜻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채용개요

채용분야 및 인원

구분	서울북부지역본부 공무원(시설직 주임(가))
채용인원	1명

수행업무

구분	수행업무
시설직(가)	사옥 안내, 방문객 응대 및 임원 의전, 안내방송, 노트북 반·출입 관리, 비상연락망 관리 등 행정지원 업무

지원자격: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접수마감일 '25.3.26. 기준)

채용분야	지원자격
공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연령·성별·학력 등 제한 없음(단, 공단 정년* 이상자는 제외) ※ 시설직: 만 60세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사람공단 「인사규정」 제11조의 결격사유 참고 1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임용(예정)일부터 근무가 가능한 사람
시설직 주임(가)	공통 지원자격 이외의 별도 요건은 없음 ※ 관련 분야 유경험자 우대

근로조건

구분	내용
임용	2025. 5. 7.(수) 예정
정년	만 60세
근무장소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근무시간	1일 8시간(09:00~18:00), 주 5일 근무 ※ 일 8시간 범위 내 근무 시간이 조정될 수 있음
연봉월액	2,360,000원 ※ 식비, 명절휴가비가 포함된 금액으로 자격수당, 가족수당 등 추가 지급되는 수당은 없으며 경영평가성과급, 복지포인트, 단체보험은 별도

□ 우대사항(접수마감일 '25.3.26. 기준)

구분	대 상 자	증빙서류	적용단계	가점
취업지원 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 4명 미만 채용으로 동점자 발생 시 우대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쏠 전형	5/10
장애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장애인	장애인 증명서	쏠 전형	10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수급자 * 지정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경우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결정 통지서	서류전형	5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해당하는 수급자 * 지정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경우	한부모가족 증명서	서류전형	5
북한이탈 주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 본인 명의 등록확인서 발급이 가능하고, 북한이탈주민 가족관계등록 창설 후 3년 이상인 경우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기본증명서 (상세)	서류전형	5
다문화가족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 * 귀화한 본인·배우자·자녀, 결혼이민자의 배우자·자녀	다문화가족 증빙서류	서류전형	5
자립준비청년	「아동복지법」 제16조 또는 제16조의 3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사람 * 보호시설을 퇴소한지 5년 이내인 사람	보호종료확인서, 자립수당 수급자 확인서 등	서류전형	5
의사상자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의사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의사상자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가족인 경우)	서류전형	5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취업보호의 대상이 되는 의사자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취업보호의 대상이 되는 의사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3

※ 각 가점의 기간 산정은 입사지원서 접수마감일('25.3.26.)을 기준으로 함

※ 우대사항이 중복으로 해당할 경우 가장 유리한 가점 1개만 적용

3. 전형절차 및 일정

구분	내용	일정
지원서 접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접수방법: 채용사이트를 통해서 접수(https://nps.recruiter.co.kr) ※ 우편·이메일·방문 접수 불가, 접수마감 이후 입사지원서 제출 불가 · 제출서류: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25.3.19.(수) ~ 3.26.(수) 18:00까지
서류 전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격요건 충족 여부, 경력, 우대사항 등을 고려하여 채용 예정 인원의 5배수 선발 · 자기소개서는 각 항목에 대해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하며, 불성실 작성 시(내용 없음, 동일 내용 반복, 특정 기호만 표기, 질문과 무관한 내용 등) 불합격 처리 	'25.4.7.(월) 서류전형 합격자 개별통보
인성 검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온라인 인성검사 실시 ※ 인성검사 미참여자는 면접전형에서 제외 · 검사결과는 면접전형에서 참고자료로 활용 	'25.4.8.(화) ~ 4.10.(목)
면접 전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간·장소: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별도 안내 · 방법: 조별면접(1개조 5명 내외, 조별 30분 내외) 실시 ※ 공단 내·외부상 사정에 따라 개별면접으로 진행될 수 있음 	'25.4.17.(목) ~ 4.18.(금) 면접일시·장소 개별안내
최종 합격자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접전형 합격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합격자 선발 ·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고득점자 순으로 예비합격자 2명 선발 	'25.4.25.(금) 최종합격자 개별통보
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보 기간(3개월) 운영 후 근무 성적이 양호한 경우 공무원(무기계약직)으로 정규 임용 	'25.5.7.(수) 예정

※ 공단 내·외부 사정에 따라 추진 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4.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내역 면접전형 시 제출
경력사항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력사항 기재자는 아래 사항 필수 제출(①, ② 모두) ① 입사지원 시 기재한 경력사항에 대한 경력증명서 전체 ② 4대보험 가입 증명서 1종 (국민연금가입자기입증명,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 중 1종) ※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경력사항이 경력·재직증명서를 통해 관련분야의 확인이 가능하여야 하며, 4대보험 가입 증명서 이력과 일치해야 인정됨 (경력·재직증명서 상 해당업무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인정 불가) ※ 폐업으로 인하여 경력증명서 발급 불가 시 해당 경력 인정 불가 ※ 경력증명서는 경력사항 확인을 위하여 제출받는 것으로, 공무원 보수는 연봉제를 적용함에 따라 호봉 산정과 무관함
우대사항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장애인 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사회복지 서비스 및 급여결정 통지서 포함), 한부모가족 증명서 ○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기본증명서(상세)) 포함 ○ 다문화가족 증빙서류(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등록증 사본 등 다문화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자립준비청년 증빙서류(보호종료확인서, 자립수당 수급자 확인서 등) ○ 의사상자 증명서(가족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포함) ※ 우대사항 증빙서류는 접수마감일(25.3.26.) 이후 발급한 원본 제출

5. 기타 유의사항

- 응시자격, 경력, 우대사항 등과 관련된 사항은 지원서 접수마감일(25.3.26.)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블라인드 채용 도입에 따라 서류전형 시 지원자가 기재한 내용만으로 평가를 진행하며, 기재 내용에 대한 모든 증빙서류는 면접 시 안내에 따라 제출해야 합니다. 증빙서류가 미비할 경우 공단에서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제출해야 인정됩니다.

- 자기소개서 작성 시 직·간접적으로 성명, 생년월일(연령), 성별, 학교명, 출신지, 가족관계, 혼인여부 등을 기재하는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서 기재 내용의 착오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모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며, 추후 증빙서류와 지원서에 기재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더라도, 응시 자격 또는 임용에 결격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됩니다.
- 최종합격자는 임용일로부터 즉시 근무가 가능하여야 하며, 임용일부터 무단 결근한 경우 임용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공무원 최종합격자는 3개월 기간의 시보로 임용되며, 시보기간 중 근무성적 평가 결과에 따라 정규직원으로 임용됩니다.
- 예비합격자는 합격자 임용포기 등 결원인력 충원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임용하며, 임용사유 발생 시 해당자에게 개별 통보합니다.
- 채용 시험에 있어 부정행위를 한 사람 또는 부정하게 합격한 사람은 해당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시험 응시자격을 제한합니다.
- 재직 중에는 4대보험 적용 여부 불문하고 영리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공단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습니다.(임용일 전 4대보험 퇴사 완료 및 사업자등록증 소지자는 폐업등록 완료 필요)
- 최종 합격되지 않은 경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로부터 14일 이내에 제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청구 기간이 지나면 제출서류는 개인정보 보호에 의해 파기되므로 반환이 불가합니다.
- 채용시험에 불합격한 자는 채용 관련 비위 또는 부정행위에 대하여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5일간('25.4.25.~5.12.)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접수방법) 이메일(nps1121@nps.or.kr)로 이의신청

• 이의신청 처리 예외 사유

- 본 채용과 무관하거나 이의제기와 관련 없는 채용제도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 응시자, 시험출제자, 면접위원 등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문의하거나, 타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
- 기타 위 사유에 준하는 사항

※ 평가기준, 전형결과와 관련된 단순질의 및 개별적인 피드백 등은 이의신청 처리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이와 관련된 내용은 답변불가

- 채용 일정은 공단 내·외부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입사지원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서울북부지역본부(02-2176-9902, 9905)로 문의 바랍니다.

2025. 3. 19.



공단 「인사규정」 제11조에 따른 결격 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 6의2. 공단 직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및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전직근무기관에서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된 날로부터 5년, 해임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8. 「병역법」상의 병역의무를 기피중인 사람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사람
10. 공단 또는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경우에 채용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